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 제10항”을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8촌”을 “6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조제2항제1호”를 “제4조제5항제1호”로, “제4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유가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수 및 가판판매부수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 본문”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4조제6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제10조제1항 중 “신청인에 관한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제16조의 제목 “(재허가 등)”을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를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을 “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2.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
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기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9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광고”를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2.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4.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상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의 가상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상광고의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2호의3란 및 제2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0호	
가.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한 자		700
나.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 기구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300
다.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1,000

별표 4에 제25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3. 법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25호의3	700만원
---	-------------------	-------

별표 5에 제10호의2란 및 제10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법 제74조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10의3.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 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등록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방송사업자(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중계 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 대상은 제외한다)·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승인의 취소	등록의 취소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승인 취소	등록의 취소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허가·승인 취소	등록의 취소
8.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 제7호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10. 법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2.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u>별</u> <u>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u> <u>제10항</u>에서 “특수관계자” 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p> <p>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p> <p>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u>8촌</u>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p> <p>나. · 다. (생략)</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u>제4조제2항제1호</u>, 같은 조 <u>제4항제3호</u>, 같은 조 <u>제5항</u>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 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p>	<p>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u>별</u> <u>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u> <u>제11항</u>----- ----- ----- -----.</p> <p>1. ----- ----- -----</p> <p>가.----- ----- <u>6촌</u> ----- -----</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제4조제5항제1호</u>----- --- <u>제7항제3호</u>-----<u>제8항</u> ----- ----- -----</p>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생략)

<신설>

-----.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유가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판매부수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신 설>

<신 설>

②법 제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⑤법 제8조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④법 제8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⑤법 제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

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7항-----

-----.

1. ~ 4. (현행과 같음)

⑦법 제8조제8항 -----

--.

1. ~ 6. (현행과 같음)

⑧법 제8조제9항-----

-----.

합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

⑨제6항제1호 -----

-----.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사항 및 사업계획
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제16조(재허가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다음 각 호의 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
----- 5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
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

②· 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3항에 따라 -----

-----.

⑥ 제3항 -----
-----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

-----.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 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

<신 설>

제21조의2(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위한 방송광고

3의2.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관람가” 또는 “12세관람가”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본편 영화의 방송광고

3의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신 설>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2.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교육

<신 설>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출이 발생한 연도” 는 이를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연도” 로 본다.

⑧ (생략)

제59조(방송광고) ① (생략)

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라 기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59조(방송광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 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음)

②-----
----- 공익광고, 가상
광고 및 간접광고-----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법 제73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
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
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가
상광고를 할 수 있다.

2.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
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4.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
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

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상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의 가상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상광고의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1의2. (생 략)

2. ~ 5. 삭 제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의2. (현행과 같음)

6.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7. (생략)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

6. -----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
---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
른 -----

2. ~ 3. (현행과 같음)

<삭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하
고자 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정
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구 또는 단체의 방
송·광고업계에 있어서의 대표
성과 수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
제1항 및 법 제100조제3항에 따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
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
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법 제19조
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